

의안번호	2217253
의 퇴 인	최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3.12.
추계번호	26B1251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	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,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행정부”라 한다)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	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·복지,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·국무총리(행정부를 대표한다)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정부교섭대표”라 한다)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 참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8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안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□ 현행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·행정부·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
- 현행법에 따라 행정부의 경우 전체 부·처·청·위원회가 행정부로서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며, 근무시간 면제한도 또한 전체 행정부 기준으로 부여받음
 - ‘근무시간 면제제도’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 또는 정부 교섭대표의 동의 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보수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²⁾

□ 개정안은 행정부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³⁾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임

-
- 1) 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·행정부·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.
- 2) 제7조의2(근무시간 면제자 등)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(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"정부교섭대표"라 한다)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·교섭, 고충처리, 안전·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
- 3) 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.
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·처·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,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
1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
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
 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
 4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
 5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
 6. 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
 7. 「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
 8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 9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 역시 각 부처별로 부여받게 되므로,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할 때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·처·청·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면제자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는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와 규모, 채용 형태 및 임금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